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78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강득구·송재봉·정혜경

이기헌 · 김병주 · 윤후덕

채현일 • 이강일 • 박홍배

김준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 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.

시·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,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1항 중 "운영하여야"를 "직접 운영하여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	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
등) ① 시·도는 관할지역의	등) ①
도서관시책을 수립・시행하고	
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	
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	
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	
지정 또는 설립하여 <u>운영하여</u>	직접 운영하여야
<u>야</u>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